

우리나라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고찰*

A Study of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Korea

김 용 길**
Yong-Kil Kim

〈 목 차 〉

- I. 서 론
- II. 외국중재판정과 뉴욕협약
- III.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IV. 결 론

주제어 : 국제상거래, 외국중재판정, 상사분쟁, 뉴욕협약, 중재조항, 임의중재, 관할기관.

* 이 논문은 2010년 7월 12일부터 13일에 걸쳐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치대학에서 개최된 2010년 한·스페인 경제협력 정책세미나 및 한국중재학회의 하계 국제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재구성하였다. 당시에 지정 토론을 하여 주신 동국대학교 박영길 교수님과 질의와 토론을 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께도 이 지면을 빌어 감사함을 드린다.

** 圓光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教授, 法學博士

I. 서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 전후부터 경제성장의 디딤돌로서 수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동안 외국과의 교역을 정부의 정책기조로 삼아 상당히 중시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상거래가 매우 빈번해지고, 그 만큼에 비례하여 교역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각국의 사법제도가 서로 달라 국제간 상거래에는 각국 고유의 재판제도를 널리 이용하기가 어려우므로, 당사자간에는 재판제도보다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중재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즉 당사자간에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 중재조항이나 사후의 중재합의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양당사자가 중재조항 등에 따라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중재판정은 강제집행에 성공을 하여야 하며, 집행을 하지 못하면 중재판정문은 쓸모가 없게 된다. 따라서 국제상거래간에는 중재판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을 제정하였다. 우선 우리나라는 1973년 2월 8일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조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 뉴욕협약)에 가입하여 같은 해 5월 9일부터 발효되었다. 현재 뉴욕협약은 세계 선진국들이 대부분 가입하고 있으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1985년에 채택된 UNCITRAL(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의 국제상사중재모델법(Model Law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모델법)은¹⁾ 우리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중재관련 법규를 제정 및 개정시에 관련 조항들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상 중재판정은 양당사자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면서, 중재판정을 국내 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으로 나누어 그 승인과 집행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의 특징으로는 원칙적으로 UNCITRAL 모델법을 수용하면서, 외국중재판정의 경우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뉴욕협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²⁾ 본 논문에서는 중재법과 뉴욕협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1985년의 UNCITRAL 모델법은 뉴욕협약의 시행을 점검하기 위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에 의하여 1977년에 이루어진 요청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동 위원회는 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한 각국 법원의 접근방법에 명백하게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하였다. (박영진, “국제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기 위한 사유로서의 공서”, 중재연구 제12권, 한국중재학회, 12면. UNCITRAL 사무총장은 각국의 집행관행을 조화시키는 것과 중재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뉴욕협약을 개정하려는 시도보다는 모델법 또는 통일법의 공포에 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UN Doc A/N. 9/168).

2) 김상호, “한국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仲裁研究 제17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7, 4면.

Ⅱ. 외국중재판정과 뉴욕협약

1. 의의

국제교역이 빈번한 오늘날 세계 각국은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사중재제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제도나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그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문화와 관습, 사고방식 그리고 법제도들의 차이가 있어서 중재제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중재제도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상이한 중재제도를 극복하고,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용이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1923년에 제네바의 정서(Geneva Protocol on Arbitration Clause)와 1927년에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이³⁾ 결실을 맺게 되었고, 그 후 제네바협약의 미비점⁴⁾ 보완하여 뉴욕협약⁵⁾ 마련함으로써 제네바협약의 단점을 개선하였다. 미국은 1970년 9월 30일에 뉴욕협약에 가입한 후에 연방중재법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1966년에 중재법을 공포하면서 중재기관을 설립한 후에, 1973년에 뉴욕협약에 가입하면서,⁶⁾ 상사한정 유보선언과 상호주의 유보선언을 하였다. 따라서 이 때부터 우리나라는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국내중재판정과 동일하게 취급할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 후 1999.12.31일에 중재법을 전면개정하면서⁷⁾ 우리나라는 UNCITRAL의 모델법을 거의 대부분 수용하였다. 따라서 1966년에 제정된 중재법의 문제점이었던 중재절차규칙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로서 私人間的 분쟁해결을 위한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을 국내에서 구현하게 되었다.⁸⁾

2. 뉴욕협약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는 제네바의정서와 제네바협

-
- 3) 제네바의정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이를 개선한 것이 제네바협약이다.
 - 4) 제네바협약은 입증책임을 신청인에게 모두 부담시키고,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용이하게 집행하기가 어려웠다.
 - 5) 뉴욕협약은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하여 준비된 국내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보고서와 협약초안에 기초를 두고 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1927년의 제네바협약에 의하여 창설된 체제가 더 이상 국제거래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박영길, 전제논문, 10면.
 - 6)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1973년 2월 17일 조약 제 471 호)
 - 7) 중재법은 한글화를 위하여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07호로 내용의 변경없이 일부 개정되었다.
 - 8) 강병근, “임시적처분과 보전처분에 관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논의와 우리 중재법에 미칠 영향”, 한림법학 FORUM 제15권, 2004, 170면.

약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이 보장되는 범위에 한계가 있는 동시에 국경을 넘는 중재판정을 집행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자 제네바협약을 개정하는 초안을 성안하였다. ICC는 국제적으로 집행력이 보장되는 중재판정의 범위를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요건을 간단하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용의 원활화를 통하여 국제상거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958년에 뉴욕의 UN본부에서 전문 16개조항으로 된 뉴욕협약을 채택하였다. 뉴욕협약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제무역의 원활하고 신속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중재제도의 특징인 신속한 절차, 경비의 절감, 기업의비밀의 유지, 전문가에 의한 審理 등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중재에 대한 각국 국내법의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절차들을 대폭 규제하는데 있다.⁹⁾ 즉 뉴욕협약은 각국의 중재법을 인정하면서 각국의 중재기관이 내린 중재판정에 대해 승인과 집행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제간 다자조약이다. 뉴욕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선 뉴욕협약 체결국가 중에서 내려진 “외국중재판정”은 승인되고 강제집행이 보장된다. 둘째, 국가 또는 공법인이라도 중재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私人처럼 적용하며, 임시중재와 기관중재에 모두 적용된다. 셋째, 중재절차의 준거법 및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있어서 당사자자치 원칙을 인정한다. 다만, 준거법 선택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넷째, 뉴욕협약 제4조가 규정하는 중재합의서와 중재판정문의 원본을 제출하면 피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을 허용해야 한다. 다섯째, 집행청구의 거부 조건 중 중재판정에 대한 이유의 기재조건이 배제되어 있다. 여섯째, 중재판정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중재합의의 유효성과 중재판정의 적법성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만을 인정함으로써 승인과 집행의 신속화를 꾀하고 있다.

3. 외국중재판정

(1) 의의

중재판정은 중재인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부여받은 중재권한을 기초로,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판단행위를 말한다.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으나 뉴욕협약이나 우리나라 중재관련법규에 따라 살펴보면 외국중재판정이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요구받은 국가(피집행국) 이외의 체결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물론이고 피집행국의 국내법에 비추어 볼 때 국내중재판정으로 인정할 수 없는 중재판정도 포함한다. 외국 중재판정의 범위를 될 수 있는 한 넓혀서 동 협약이 의도하는 강제집행의 혜택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이다. 다만, 동 협약은 상호

9) 뉴욕협약은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을 불리하게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체결국들이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법규들을 대폭 규제하는 것이다.

주의와 당사유보선언을 할 수 있다.¹⁰⁾ 중재판정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私法상의 법률행위로 보는 견해는 중재인의 권한이 당사자간 합의에서 출발하고, 중재계약의 성립 및 효력 발생의 요건이 사법상의 계약과 같이 취급되는 것을 이유로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소송법상 내지 공법상의 행위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는 중재판정이 기판력과 집행력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¹⁾ 뉴욕협약은 두 견해를 모두 수용하고 있어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시키고 있다.

(2)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의 구별

국내중재판정¹²⁾ 외국중재판정¹³⁾ 구별 기준으로는 당사자의 국적, 중재인의 국적, 중재법원의 소재지, 중재절차의 진행지(중재판정지), 중재판정의 의뢰지, 중재계약이 정하는 준거법의 국가, 중재판정의 판단기준으로 하는 국가의 법 등이 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이 행하여진 장소를 기준으로 중재판정에 관한 국적으로 삼는 견해를 절차지설이라 한다.¹⁴⁾ 이 견해는¹⁵⁾ 중재절차는 소송절차에 갈음하는 것으로 ‘소송절차는 소송지법에 의한다’라는 원칙이 적용되어 중재절차는 중재지의 법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당사자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제한을 받으므로 외국중재판정은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이 외국에서 행하여진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중재계약을 사법상 또는 실체법상의 계약으로 보고 중재절차도 이 계약상의 준거법에 의거하여 중재판정에 관한

10) 李淳雨, “商事仲裁制度의 法的構造에 관한 研究”(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2001), 59면.

11) 申漢東, 商事仲裁實務(新英社, 1993), 235~236면.

12) 국내중재판정에 있어서 ‘국내’라는 용어와 ‘내국’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즉 뉴욕협약 제1조의 domestic awards를 ‘국내판정’ 또는 ‘내국판정’이라고 번역하는 입장에 따라 다른데, 내국판정이라고 하는 입장은 뉴욕협약의 국문 번역의 일관성 유지, 그리고 중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내국판정과 외국판정으로 나누고, 중재의 대상인 분쟁이 국제적 요소를 가졌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로 나누어야 한다고 한다. 석광현, “개정중재법의 몇가지 문제점-국제상사중재를 중심으로-(중재 제298호, 2000, 겨울), 29면.

13) 외국중재판정과 관련하여 국제중재판정과 그 의미가 같은 것인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현행 중재법에는 국제중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제중재라 함은 어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중재를 것이나, 현재 보편타당한 국제중재의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분쟁의 성질에 착안하는 견해, 당사자에 착안하는 견해, 당사자에 착안하는 견해와 위 양자를 결합한 혼합형이 있다. 석광현, 한국 중재법상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국제상사중재를 중심으로(한국 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사단법인 한국중재학회, 2010), 109~110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2조는 의 상사중재를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로 나누고, 국내중재는 국내에 주된 영업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간의 중재를 말하며 국제중재는 위의 국내중재를 제외한 중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국제중재규칙 제2조 제4호는 모델법과 유사하지만 다소 상이하게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국제중재”라 함은 중재절차의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할 당시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을 갖고 있거나, 다음 장소 중의 한 곳이 당사자들의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국가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a) 당사자간의 중재합의에 따라 정해진 중재지 (b) 계약상 의무의 실질적인 부분이 이행되는 장소 또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장소.

14) 吳松枝, “外國仲裁判定의承認·執行について-1958年6月18日のニコ-ヨク條約を中心として, JCAジャーナル, 第36卷第2號, 3면.

15) 簡次地説의 근거로 주장되는 이론에서는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중재지의 재판관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고 그 경우 장소는 행위를 지배한다(locus regit actum)는 원칙이 행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梁炳晦, “뉴욕協約에 있어서의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 社會科學 第17집, 건국대학교, 1993, 7면.

국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준거법설(계약설)이다.¹⁶⁾ 이 견해는 외국중재판정이란 외국법에 복종하는 중재판정 즉 그 성립 및 효력이 외국법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중재판정이라고 하고, 중재판정의 국적결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중재절차의 준거법이 내외 어느 국법인지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한다.¹⁷⁾ 아울러 중재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한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계약과 관련있는 다른 요소로부터 추정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을 중재지에 불문하고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중재계약, 중재절차, 중재판정의 각 준거법이 필연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문제될 수도 있다.¹⁸⁾ 이 양설은 모두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후자인 준거법설이 우세하다.¹⁹⁾ 그러나 UNCITRAL 모델중재법 제31조 제3항에서 중재판정문에는 반드시 중재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우리나라 중재법도 중재판정문에 반드시 중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렇게 기재된 장소에서 중재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3항).

(3) 뉴욕협약상의 외국중재판정

뉴욕협약은 제1조 제1항에서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국가, 자연인 또는 법인 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한다. 이 협약은 또한 그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국내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영역을 기준으로 외국중재판정의 범위를 판단하는 원칙을 정립한 것으로, 중재판정이 행하여진 장소와 집행국 등이 기준이 된다. 즉 뉴욕협약 제1조의 외국중재판정은 우선 집행이 구하여진 국가에서 볼 경우 집행이 구하여진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행하여지거나, 또는 집행국에서 볼 경우 국내중재판정에 해당하지 않은 중재판정 등이다. 집행국에서 행한 중재판정으로서 집행국법상 집행국의 국내판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예상하고 있다.²⁰⁾ 그러나 뉴욕협약 제1조 제1항은 외국중재판정의 개념을 정의한 것은 아니다.²¹⁾

16) 김홍규, “외국중재판정의 국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 상사중재연구총서Ⅶ, 대한상사중재협회, 1975, 32면; 川上太郎, “わが國における外國仲裁判斷の執行判決に關する綜合研究(1)-(6)”, JCAジャーナル, 第24卷 第9號, 23면.

17) 梁炳晦, 전계논문, 4-5면; Schütze, IZPR, 1985, S.215f.; Schwab/Walter, Schiedsgerichtsbarkeit, 4 Aufl. 1990, S. 353f.

18) 中野俊一郎, “國際商事仲裁における實効性の確保”, 神戸法學 第38卷 第2號, 360면.

19) 小山昇, 仲裁法, 有斐閣, 1983, 229면.

20) 그러나 뉴욕협약의 적용대상은 집행국 이외의 국가에서 내려진 외국 중재판정이 주대상이고 여기서 말하는 ‘국내판정에 해당하지 않은 중재판정’은 부가적 기준에 불과하다.

21) 예를 들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를 甲국가로 하고 그 외의 국가를 乙국가로 하고 또 甲국가와 乙국가도 모두 계약국이라고 할 때에 乙국가의 영토내에서 행하여진 중재판정이 甲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게 된다면 甲국가는 뉴욕협약을 적용하여 처리하면 된다. 그렇다고 하여 이 중재

4. 상호주의 유보선언 및 상사한정 유보선언

뉴욕협약 제1조 제3항에서는 “어떠한 국가든지 이 협약에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할 경우 또는 이 협약 제10조에 의하여 확대적용을 통고할 경우 상호주의에는 그에 따라 다른 체약국의 영토내에서 내려진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뉴욕협약의 가입국에게 상호주의 유보선언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은 양당사자가 동등한 권리의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수동적, 방어적인 권리를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체약국이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뉴욕협약을 가입할 당시에 상호주의 유보선언을 채택하였으므로 뉴욕협약 가입국 이외의 국가에서 내려진 외국중재판정에 대해 승인과 집행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중재지를 선택하는 경우 뉴욕협약에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상사한정 유보선언이란 체약국의 국내법상 商事(commercial)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분쟁에 한하여 뉴욕협약을 적용할 것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 조항에 따라 우리나라는 상사관계에 관한 분쟁에 한하여 뉴욕협약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상사관계인지 여부는 우리나라 상사관련법상의 기준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商事’의 개념에 대하여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다.²²⁾

Ⅲ.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1. 의의

(1) 서설

중재판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되고, 외국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간 상거래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분쟁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은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재판정은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때 실질적인 효력을 기대할 수 있다. 외국중재판정은 그 자체로는 집행력이 없으며, 당해 중재판정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이 있어야 하며,²³⁾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를

판정이 미국가에서 볼 때 반드시 외국중재판정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2) 김상호, 전제논문, 7면.

23) 중재법 제3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

신청할 사유가 없는 한 승인 또는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집행의 대상이 되는 외국 중재판정은 그 자체로서 타국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 중재판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그 효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외국중재판정에는 반드시 승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²⁴⁾ 한편, 국내중재판정은 집행력이²⁵⁾ 있으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중재법 제35조). 분쟁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재판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그 이상 다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²⁶⁾

(2) 승인과 집행의 개념

각국은 독자적으로 司法的 主權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 타국에서 인정받고 그에 따른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승인과 집행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승인이란 타국에서 행하여진 사법적 판단을 인정하겠다는 사법적 의사표시이고, 집행은 타국에서 행하여진 사법적 판단에 강제력을 인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승인은 그 요건의 존부를 확인하여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법에 의한 효력을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승인과 집행은 전혀 별개의 절차로서 논리적으로는 승인 절차가 집행절차에 선행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승인과 집행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승인절차만 있고 집행절차에 이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²⁷⁾ 중재법은 뉴욕협약이나 UNCITRAL 모델법과 마찬가지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²⁸⁾ 중재판정의 승인은 집행없이도 허용될 수 있지만, 집행은 승인됨을 전제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집행은 승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²⁹⁾ 승인은 법원이 중재판정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며, 승인을 받은 중재판정은 기판력을 가지게 된다. 중재판정의 집행은³⁰⁾ 승소한 중재신청인이 그 판정의 내용을 법적으로 실현시키는 행위이다. 즉 예정된 집행지국에서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부여받음으로써 강제집행 등 집행지법상의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집행판결제도는 외국판결의 집행판결이라는 제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장점이 있으나 법원의 일반 판결절차에 의하므로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식절차

24) 중재법 제39조 및 뉴욕협약 제3조.

25) 집행력이라 함은 좁은 의미로는 판정의 내용인 의무를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행시킬 수 있는 효력을 말하며, 광의로는 강제집행이외의 방법으로 중재판정의 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실현시킬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26) 이것이 중재판정에 법률상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는 근거이고 입법정책적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7) 류시창,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국제법무연구 제12권 제12호, 경희대학교, 2008, 111면.

28) 우리나라 중재법 제37조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의 승인제도와 관련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의 경우는 중재판정의 승인을 위한 별도의 제도는 두지 않고 뉴욕협약 또는 국내 중재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중재판정이 승인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9) 睦榮垸, 商事仲裁法論, 博英社, 2000, 240면.

30) 중재판정의 집행제도에 대한 각국의 입법을 살펴보면 한국은 집행판결, 미국은 확인명령, 영국은 집행승인, 독일과 프랑스는 집행선언, 일본은 집행결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인 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³¹⁾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외국중재판정은 우리나라에서 법적 효력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 중재법 제35조는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면서 제38조는 “대한민국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승인 또는 집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 중재판정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승인이 필요하다.³²⁾ 다만, 우리 중재법 제39조 제1항은 승인에 관하여 독립적인 방식을 규정하지 않고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³³⁾³⁴⁾ 승인이 집행의 전제가 될 때에는 집행을 허가할 것인가의 여부도 승인에 포함된다.³⁵⁾ 그리고 소송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중재판정의 효력을 먼저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에 그것이 외국중재판정일 경우에는 이의 승인여부가 선결문제로 된다. 즉 뉴욕협약상 승인국의 정치, 경제 질서에 위배되거나 공평의 견지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모순 등이 있는 경우³⁶⁾ 등은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³⁷⁾ 중재판정에 하자 또는 기타의 사유가 존재하면 승인이 거부

31) 일본 중재법 제46조는 “중재판정에 기하여 민사집행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채무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법원에 대하여 집행결정을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집행결정은 중재판정에 기하여 민사집행을 허락하는 취지의 결정을 말한다.

32) 중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재판정의 승인을 위하여는 ‘승인’이 필요한지 아니면 ‘승인판결’이 필요한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승인판결에 의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입법론적으로는 제37조 제1항의 ‘승인’을 삭제하거나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결정에 의한다고 하는 것이 보다 신속 간편하고, 진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판단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는데, 어디서든지 한번만 판단하면 될 것이다.

33) 대법원 1988.2.9. 선고 84다카1003 판결은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1973년 2월 17일 조약 제 471 호) 제1조 제1호,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외국중재 판정이 위 협약에 의하여 승인, 집행될 수 있으려면 우선 당해 중재판정이 위 협약의 적용 대상인 동협약 제1조 제1호 소정의 중재판정이어야 하고 또한 당해 중재판정이 당사자 간의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므로 위 협약에 의거한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요구를 받은 집행국 법원로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중재판정서와 중재합의서를 검토하여 당해 중재판정이 위의 조건에 들어 맞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집행거부사유 유무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이 점에서 당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집행국 법원에 중재판정의 내용에 대한 당부를 심판할 권한은 없지만 집행 조건의 충족 여부 및 집행 거부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본안에서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도 집행국 법원이 독자적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4) 뉴욕 협약 가입국에서 이루어진 상사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있어서는 뉴욕 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위 협약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재법이 적용된다. 서울민사지법 1984.4.12. 선고 83가합7051

35) 소에 의하여 집행허가의 여부 판결을 하는 것은 승인여부가 함께 포함된다.

36) 뉴욕협약 제5조제2항 (b).

37)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은 “뉴욕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에 의하면 중재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재 판정이나 승인이 집행 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 질서의 안정이

되며,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승인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된다.³⁸⁾ 그리고 외국중재판정이 우리나라 국제사법이 지정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유효하고, 그 확정된 내용이 우리나라 법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승인요건이 된다. 그리고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에 대하여 살펴 보면 우리나라는 뉴욕협약과 워싱턴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뉴욕협약 제3조는 각 계약국은 중재판정을 일정한 조건하에서 구속력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그 판정이 원용하는 지역(영토)의 절차규칙에 따라 그것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협약³⁹⁾ 제54조 제3항은 중재판정의 집행은 동 집행을 요구받은 국가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판결의 집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중재법 제39조 제1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동 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이들 협약을 준수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중재법 제39조 제2항은 뉴욕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⁴⁰⁾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⁴¹⁾ 및 제27조를⁴²⁾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들 규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대하여 준용된다.

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 38) 대법원은 2009.5.28. 선고 2006다20290 판결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의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외국중재판정 후에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그 외국중재판정에 기하여 신고한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어 정리채권확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외국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정리채권확정소송의 관할 법원은 위 협약 제5조에서 정한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외국중재판정의 판정주문에 따라 정리채권 및 의결권을 확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홍콩중재판정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판결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홍콩중재판정은 뉴욕협약의 승인거부사유가 없는 한 우리나라 법원의 승인판결이 없어도 기판력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 39)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주도로 “일방국가가 타방국가와 국민간의 투자분쟁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ICSID)”을 만들었으며, 1967년 3월 23일 조약 제234호로 우리나라 법에 수용되었다. 이 협약에 따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를 설치하였다.
- 40)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에 있을 것 등이다.
- 41)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판결의 강제집행) 제1항에 의하면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42)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 또한 제2항은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즉 (1)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등이다.

3. 외국중재판정의 집행판결절차

(1) 집행판결청구의 소제기

중재판정을 구하는 소송도 보통의 소제기 방식에 따라야 한다.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중재법 제35조),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중재법 제37조 제1항) 집행판결이 없으면 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성질에 대하여는 이행소송설,⁴³⁾ 확인소송설,⁴⁴⁾ 구제소송설,⁴⁵⁾ 형성소송설⁴⁶⁾ 등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⁴⁷⁾ 사적문서에 불과한 중재판정문이 법원으로부터 집행판결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력이 생기는 것으로 볼 때 집행판결은 형성판결이고 이를 구하는 소는 형성의 소라고 보고 있다.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사법상의 권리의무 및 법률관계의 존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통상의 민사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집행판결제도는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판결의 내용은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의 선언이다.

(2) 관할법원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의 관할법원은 우선 중재합의로 정한 법원이 된다. 원고는 집행지의 법적 환경, 소송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중재법 제7조 제4항에 4가지 관할법원 중 하나를 우선순위 없이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⁴⁸⁾ 지정법원이 없을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2항).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거나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조).⁴⁹⁾ 이러한 법원이 뉴욕협약이 예정하는

43) 외국의 중재판정에서 확정된 실체법상의 청구권에 기초하여 다시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44) 외국판결이 본래 가지는 집행력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즉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력 존재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金柱祥, “外國判決의 承認과 執行”, 사법논집 제6집, 1987, 514-515면; 한충수,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변호사·회원연구논문집, 2000, 193면; 고광하, “외국금전판결의 승인과 집행(上)”, 대한변호사협회지, 1984, 53-55면은 확인소송설의 입장에서 형성소송설을 비판하고 있다.

45) 확인기능과 형성기능을 함께 갖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46) 본래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외국판결에 대하여 국내에서 새로이 집행력을 부여하는 소송상의 형성의 소로 보는 견해이다. 崔公雄, “外國判決의 效力”, 사법논집 제18집, 1987, 334면; 김수형, “外國判決의 執行”, 국제사법연구 제4호, 1999, 499면; 崔孝燮, “外國判決의 執行-身分에 관한 判決과 관련하여-”, 사법연구자료 제16집, 1989, 278면.

47) 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48) 藤榮堧, 전거서, 267면.

관할기관(the competent authority)이다.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청구의 소에 관한 관할규정은 다른 관할규정이 순차적, 보충적인 것과는 달리 선택적이다.

(3) 집행판결청구의 소의 방식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소장에는 당사자(당사자가 소송무능력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표시) 그리고 중재판정의 표시, 입증방법 및 중재판정에 관하여 집행판결을 구하는 요지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중재판정도 같다. 그리고 집행판결청구의 소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에서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고, 중재판정문을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외국어로 쓰인 중재판정문은 번역문도 첨부하여야 한다(중재법 제37조 제2항). 중재판정문을 제출하는 것은 중재판정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의 적법요건이며, 외국중재판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청구소송에서는 집행의 옳고 그름의 뉘우에 대한 심사나 판단은 할 수 없고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중재판정 취소사유의 유무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⁵⁰⁾ 취소사유가 있으면 청구를 기각하고,⁵¹⁾ 취소사유가 없으면 청구를 인용하는 집행판결을 한다. 집행판결에 의하여 적법성이 확정되므로 우리 중재법 제36조 제4항은 법원에서 집행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협약 제4조는 중재판정의 집행신청에 관한 서류의 제출에 대하여 1) 정당하게 인증된⁵²⁾ 중재판정문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및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2) 중재판정문이나 합의가 원용될 국가의 공용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문서의 공용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³⁾ 번역문은 공증인 또는 선서

49) 대법원 1988.10.25. 선고 87다카1728 판결은 “구 민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의 취지는 재산권상의 소의 피고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알릴 수 있는 재산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그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얻으면 이를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건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법원에 그 재판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50) 엄덕수, “중재판정 후 강제집행절차 실무”, 계간 仲裁 제329호, 大韓商事仲裁院, 2009, 32면.

51) 대판 2001.10.12. 99다45543, 45550에서 대법원은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것만으로는 집행판결청구의 소의 제기를 저지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52) 제37조 제2항 1호와 제2호의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을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석광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국제사법학회 2010년 연차학술대회, 2010, 136면.

53)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은 “뉴욕협약 제2조에는 각 계약국은 중재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하는 취지의 당사자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계약문 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간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조에서는 각 계약국은 위의 중재판정을 다음 조항에 규정한 조건하에서 구속력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그 판정이 원용될 영토의 절차규칙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전조에서 언급된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및 공증된 이들의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뉴욕협약에 따른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서 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한 번역관,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⁵⁴⁾ 그러나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번역문이 엄격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부담으로 전문가에 번역을 의뢰하는 방법 등으로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⁵⁵⁾

(4) 심리절차

1) 의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심리절차는 우리나라의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우리나라는 판단기관(수소법원)과 집행기관(집행법원)이 분리되어 있는데 중재판정이 집행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법원이 심리하여 승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도 소송이므로 소의 심리의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며, 통상의 판결절차와 동일하게 소송요건, 당사자적격,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의이익 등에 관한 사항을 먼저 심리하게 된다. 뉴욕협약 제5조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소극적 요건으로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려는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할 요건과 법원이 심사하여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하려는데 있다. 뉴욕협약 제5조 제1항은 중재계약과 당사자 그리고 중재자체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가 이의가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할 수 없다. 제2항은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없이도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승인, 집행이 신청된 집행지의 기본적 법질서에 관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증명책임 사유

뉴욕협약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지는 요건은 다섯 가지가 있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련하여 우선 외국중재판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외국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효 또는 취소의 유무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 법에 따라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요건을 구비하여야⁵⁶⁾ 하고 그 후에 승인의 문제가 남게 된다. 뉴욕협약은 판

54)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다53054 판결은 “번역문이 이처럼 공증인 또는 선서한 번역관 등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위에서 열거한 번역관 또는 외교관들에 의해서 중재판정 등이 직접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들에 의해서 직접 번역되지 않았더라도 그들에 의해서 당해 중재판정을 번역한 번역문이 증명되면 족하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위 규정에서 증명이란 당해 중재판정을 번역한 번역문이라는 사실확인일 뿐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또한 그 번역의 정확성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55) 대판 2004.12.10. 2004다20180.

56) 제217조(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다

정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나 또는 그 국가의 법령에 의거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을 거부할(may refuse) 수 있다(제5조 제1항 e호).⁵⁷⁾ 중재판정이 어느 시기에 구속력을 갖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뉴욕협약이 중재지국과 집행지국에서 이중허가를 받는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볼 때 중재판정이 내려졌으면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모델법 제35조). 한편 뉴욕협약은 해당 판정의 승인, 집행을 허가할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재지에서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도 집행국에서는 중재판정이 승인 및 집행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 유효하지 않은 중재합의의 경우이다. 뉴욕협약은 중재부탁의 효력에 관하여 “뉴욕협약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당사자가 그들에게 적용될 법률에 의하여 무능력자이던가 또는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역시 중재판정승인 거부사유가 될 수 있다(제5조 제1항 a호).⁵⁸⁾ 셋째,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우이다. 뉴욕협약은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경우”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거부사유가 된다(제5조 제1항 b호). 무능력자가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⁵⁹⁾ 이는 뉴욕협약이 중재절차에서 당사자가 적절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넷째, 중재인의 권한남용의 경우이다. 중재판정이 중재부탁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조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분쟁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판정이 중재부탁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승인거부사유가 될 수 있다(제5조 제1항 c호). 중재는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합의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합의의 범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판정하는 것은 권한남용으로서 당사자의 재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재부탁사항에 대한 결정이 부탁되지 아니한 사항과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부탁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중재판정의 부분은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다. 다섯째,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법을 위반한 경우이다. 뉴욕협약은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의 합의와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또는 중재를 행하는 국가의 법령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재판정 승인거부사유가 된다(제5조 제1항 d호).⁶⁰⁾ 즉 중재판

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57) 뉴욕협약 제6조는 “판정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이 제5조 제1항 e호에서 규정한 권한있는 기관에 제기되었을 경우에 판정의 원용을 요구받은 기관이 그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정집행에 관한 판결을 연기할 수 있고, 또한 판정집행을 구하고 있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여 줄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8) ICCA Year Book, Commercial Arbitration vol. XIX, Kluwer, 1994, p.531.

59) Ibid., p.573.

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법을 위반한 경우에 중재지법 보다 먼저 당사자들의 합의가 적용된다. 각국의 중재법은 중재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재량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는 당사자를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3) 법원의 심사요건

준거법과 공공질서에 관한 규정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재부탁격적의⁶¹⁾ 기준이 된다.⁶²⁾ 즉 특정국가의 준거법상 당사자가 화해할 권리가 없는 것을 화해 판정한 경우에는 그 외국중재판정은 준거법상으로는 적법이라 하더라도 특정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공공질서에 반할 때에는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⁶³⁾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a호는 “분쟁의 대상인 사항이 그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⁴⁾ 중재적격성은 뉴욕협약 제2조에 중재합의의 집행을 위한 요건으로도 규정되어 있다. 준거법의 적용 결과 중재부탁범위를 뛰어 넘은 것으로 인정되면 준거법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중재판정을 승인할 수가 없게 된다. 여기서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중재적격성은 국내에서 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해당 중재판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⁶⁵⁾ 경우에는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b호). 즉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급부의무가 강행법규나 공공질서에⁶⁶⁾ 반하는 경우

60)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라호의 해석도 매우 제한적인 것이 국제적인 동향이다. ICCA Year Book, op. cit., p.584.

61) “중재부탁”을 엄격히 분석하면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에 의뢰하는 협의의 중재부탁(submission to arbitration: acte de compromis)과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중재에 의뢰하는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을 동등하게 포함시킨 개념이다. 이순우, 전제논문, 206면.

62)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가 규정하는 공공질서(public policy) 규정은 나라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63)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다53054 집행판결은 “중재판정에서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인 네덜란드 안틸레스법상 소멸시효기간이 30년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우리나라 법상의 그것보다 길고 또한 우리나라 소멸시효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외국중재판정을 우리나라에서 집행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나라의 공서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에 의하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된 외국법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하여 바로 승인거부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한하여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64) ICCA Year Book, op. cit., p.597.

65)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은 중재인의 편파판정과 합리적 근거없는 부당한 중재판정인데 이러한 개념은 실체법상의 개념뿐만 아니라 절차법상의 개념도 포괄한다.

66) 공공질서는 국내적 개념과 국제적 개념으로 구별된다. 국내적 개념은 公序良俗이라 하였고, 현행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고 한다. 국제적 개념인 공공질서(international public policy)의 범위는 국내적 공공질서(domestic public policy)의 범위보다 훨씬 좁다. 그 이유는 양자의 입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a호(중재적격성)와 동조 제2항 b호(공공질서)와 관련시켜서 보

에는⁶⁷⁾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된다. 이러한 도덕적인 관념은 국가에 따라 다소 다르나 국제공공질서(international public policy)의 범위는 국내적 공공질서(domestic public policy)의 범위보다 훨씬 좁게 인정된다. 공공질서 위반으로 중재판정 효력을 부인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승인할 필요가 없다.⁶⁸⁾ 우리 대법원은⁶⁹⁾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뉴욕협약에서 승인, 집행의 거부사유로 공공질서 위반을 규정한 것은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관념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에도 대법원은 뉴욕협약상의 공공질서는 국내질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질서의 안정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공공질서의 판단시점은 집행판결 종결시임을 확인하였다.⁷⁰⁾

(5) 집행판결의 종류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소에 대한 판결에는⁷¹⁾ 통상의 경우와 같이 소의 각하, 청구기각, 청구인용의 3가지가 있다. 소 각하 판결은 관할법원, 당사자 적격 등의 소송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내려지며,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외국중재판정의 경우 그 판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의 각하 판결이 내려진다.⁷²⁾ 외국중재판정이 승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려야 하며, 승인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각을 내려야 한다. 청구기각은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선언이며,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청구의 기각은 승인거부의 취지를 포함한다. 중재판정의 집행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적법하고 유효한 판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민사소송법 제217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내리게 된다.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적법하고 유효한 중재판정이 존재하고,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에 내려진다. 청구인용은 집행을 ‘허가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며, 그 주문에는 그 취지가 분명하게 선언되어야 한다. 이 집행판결은 중재판정의 집행권원의 완성 내지 창설을 가져오는 것으로 중재법 제36조에 열거된 중재판정 취소사유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것이다. 집행판결에 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부여할 수 있다. 집행판결 역시 항소 및 상고에 의한 취소가 인정되며 판결이 절차상 확정되면 더 이상 변동시킬 수 없게 되어,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움직일 수 없는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재심에 의한 취소의 제도가 적용된다.⁷³⁾

변 그 구별이 명백하다. ICCA Year Book, op. cit., pp.594-595.

67) 강행법규의 위반이 항상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예를 들어 도박계약 등이 있다.

68) 서울민사지법 1984.4.12. 선고 83가합7051 판결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에 규정된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라 함은 승인국의 정치경제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공평의 견지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9)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70) 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71) 일본은 종래에 집행판결이었으나 2003년 개정에 의하여 집행결정으로 바꾸고(일본 중재법 제46조) 불복방법도 결정 후 2주 이내의 즉시 항고로 제한하여(동 제7조)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하면서도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72) 중재법 제3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1호.

4. 외국중재판정의 강제집행 절차

(1) 의의

강제집행은 국가의 강제력의 행사이다. 집행국에서의 강제집행은 집행국의 집행권의 행사로서 집행국의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중재판정을 집행권원(채무명의)으로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며, 또한 국내중재판정이나 외국중재판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집행권원 및 집행문

1) 집행권원(채무명의)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의한다. 확정된 집행판결이 있는 중재판정 또는 가집행선고를 붙인 집행판결이⁷⁴⁾ 있는 중재판정이 집행권원에 해당한다. 집행판결이 집행권원은 아니고 중재판정이 집행권원이다. 집행권원은 급부청구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나 집행판결은 급부청구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권원은 법률이 급부청구권을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시키는 집행력을 인정하는 공적 문서이다. 따라서 중재판정만으로 집행력이 있다고 하여서는 안되고 중재판정은 집행권원으로서는 충분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은 그 자체로서는 공적 문서로 아직 불충분하고 다만, 법률이 집행력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 사문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집행판결을 부여하여야만 비로소 공적 권위를 가진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다. 중재판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에 대하여 중재판정권원설, 집행판결권원설, 권원합체설 등이 있으나 법원은⁷⁵⁾ 통설인 권원합체설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⁷⁶⁾

2) 집행문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의 경우에도 통상의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국내중재판정의 집행문을 부여하는 기관은 중재판정의 원본을 보관하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사무관등이 된다.⁷⁷⁾ 중재판정의 원본은 그 송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을 관할하는 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한

73) 小山 昇, 전거서, 267면.

74) 집행판결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부정할 이유도 없고 또 그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 박두환, 민사집행법, 2002, 117면.

75) 대관 2005.12.23. 2004다8814.

76) 엄덕수, “중재판정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의 문제점”, 민사집행법연구 제5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9, 16~17면.

77)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1항;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1), 2003, 174면.

다(중재법 제32조 제4항).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도 집행판결을 행하는 법원사무관등은 국내중재판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문 부여의 신청이 있으면 부여 또는 부여의 거절을 한다. 이 때에는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와 동일하게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사건의 기록 및 채권자의 제출문서에 의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결정한다. 그런데 외국법에서 중재판정의 집행청구기간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집행력의 소멸원인이 될 수 있다.⁷⁸⁾ 중재판정의 효력이 현존하는가의 여부는 준거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재법은 집행판결청구의 소의 제기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규정에 따라야 한다.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재법 제35조에 의하면,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중재판정에 따른 급부의무에 대한 변제기의 도래의 유무, 조건성취의 유무 등은 집행권원의 요건이 아니므로 변제기가 미도래이더라도 집행판결을 하는 것은 인정된다.⁷⁹⁾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집행문이 필요하므로 정지조건의 미성취의 경우에는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고, 기한 미도래의 경우에는 집행문이 부여되어도 집행을 개시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이 정하는 집행개시의 요건이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강제집행절차

1) 중재판정 이전의 보전처분 절차

중재신청인은 그 신청 전후에 피신청인의 재산을 파악하면서 집행불능 상태 등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에 따라 집행할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부동산, 유체동산이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다. 가압류등을 하려면 신청인이 채권(피보전권리)의 존재와 집행보전의 필요성, 긴박성을 소명하고 일정한 담보제공이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로부터 2주를 넘기지 못하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한다.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채무자의 점유를 회수하여 집행관이 이를 점유, 지배하는 방식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라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중재판정의 신청이나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78) 뉴욕협약에서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제소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집행국의 법에 따를 수 밖에 없는데 각 국가마다 그 기간이 다르다.

79) 小山 昇, 전계서, 269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실무상 예외없이 거의 취소가 받아들여지고 있다.⁸⁰⁾

2) 집행판결 이후의 본집행 절차

본집행을 하고자 하는 중재판정 신청인은 집행판결의 정본에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더하여 피신청인 주소지 법원에 부동산 또는 유체동산의 강제경매 신청을 하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신청인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부동산등의 강제경매신청은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보통의 경매신청방식과 동일하나 집행권원의 표시가 다르다. 법원의 사법보좌관이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면 이를 전자촉탁으로 등기부에 기입하며, 이로써 본압류의 효력이 생긴다.⁸¹⁾ 채권기타 재산권에 대한 본집행은 가압류와는 다르게 손해담보공탁 등의 부담이 전혀 없으나 초과압류나 무잉여압류는 제한된다.

IV. 결 론

오늘날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품과 용역 등 재화가 국경을 넘어서 오고가고 있다. 거래가 빈번하면 빈번할수록 분쟁은 그에 비례하여 많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많은 분쟁을 각국의 사법기관에 의존하여 처리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분쟁해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국제간 거래에 있어서는 중재제도가 상당히 효율적이며 합리적이다. 당사자간에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중재조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재판정을 받았다하더라도 그 중재판정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중재판정문은 무용지물이다. 국제상거래간에서 중재판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뉴욕협약을 체결하여 해결하는 한편, 다수의 국가가 UNCITRAL 모델법을 중재관련법규에 적극 수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UNCITRAL 모델법을 중재법에 수용하면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뉴욕협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간에 발생한 제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꿈일 수도 있다. 많은 분쟁이 국제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를 해결하는 국가기관이나 각종 제도가 미비하여 이유없이 손해를 보거나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많음을 볼 수 있다. 향후 국제거래가 증가하리라는 것은 명확하므로 외국중재판정의 국내집행청구에 대한 사안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 법원들이 어느 경우에 집행청구를 받아들이고 어떠한 경우에 이를 거부할

80) 엄덕수, 전제 “중재판정 후 강제집행절차 실무”, 33면.

81) 감정평가 및 집행관의 임대차관계 조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종기, 매각기일, 매각허가기일,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배당기일 실시 등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다. 엄덕수, 상계논문, 35면.

것인가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이러한 국제거래상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법원도 국제거래의 특성을 잘 살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국제거래를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여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강병근, “임시적처분과 보전처분에 관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논의와 우리 중재법에 미칠 영향”, 한림법학 FORUM 제15권, 2004.
- 고광하, “외국금전판결의 승인과 집행(上)”, 대한변호사협회지, 1984.
- 김경배, “외국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 나타난 집행거부에 관한 고찰: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仲裁研究 제14권 제1호, 韓國仲裁學會, 2004.
- 김수형, “外國判決의 執行”, 국제사법연구 제4호, 1999.
- 김상호, “한국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仲裁研究 제17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7.
- 김석철·이주원, 개정중재법의 검토와 실무적용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貿易學會誌 제26권 제5호 통권 제43호, 2001.
- 金柱祥, “外國判決의 承認과 執行”, 사법논집 제6집, 1987.
- 김홍규, “외국중재판정의 국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 상사중재연구총서Ⅶ, 대한상사중재협회, 1975.
- 류시창,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국제법무연구 제12권 제12호, 경희대학교, 2008.
- 睦榮垸, 商事仲裁法論, 博英社, 2000, 240면.
- 박영길, “국제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기 위한 사유로서의 공서”, 중재연구 제12권, 한국중재학회, 2002.
- 石光現, 國際商事仲裁法研究, 博英社, 2007.
- 石光現,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 제2권, 博英社, 2001.
- 석광현, 한국 중재법상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국제상사중재를 중심으로, 한국 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사단법인 한국중재학회, 2010.
- 석광현, “한국 중재법상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국제상사중재를 중심으로”, 한국 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국중재학회 창립20주년 기념세미나, 2010.
- 申漢東, 商事仲裁實務, 新英社, 1993.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1), 2003.

- 梁炳晦, “뉴욕協約에 있어서의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 社會科學 제17집, 건국대학교, 1993.
- 엄덕수, “중재판정 후 강제집행절차 실무”, 계간 仲裁 제329호, 大韓商事仲裁院, 2009.
- 엄덕수,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의 문제점”, 민사집행법연구 제5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9.
- 이강빈,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에 관한 연구”, 仲裁研究 제17권 제2호, 韓國仲裁學會, 2007.
- 李鎬元, “仲裁判定의 執行判決節次”,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제9권 제1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 李淳雨, “商事仲裁制度의 法的構造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2001.
- 張文哲, “外國判決과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 警察大學 論文集 13권, 1993.
- 정선주, “중재판정의 효력: 화정력을 중심으로”,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제9권 제2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 정선주, “개정 민사소송법과 중재절차”, 仲裁研究 제14권 제1호, 韓國仲裁學會, 2004.
- 崔公雄, “外國判決의 效力”, 사법논집 제18집, 1987.
- 하충룡·박원형, “뉴욕협약상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미국법원의 해석”, 仲裁研究 제16권 제2호, 韓國仲裁學會, 2006.
- 한충수,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변호사-회원연구논문집, 2000.
- 崔孝燮, “外國判決의 執行-身分에 관한 判決과 관련하여-”, 사법연구자료 제16집, 1989.
- 小山 昇, 仲裁法, 有斐閣, 1983,
- 吳松枝, “外國仲裁判定의 承認·執行について-1958年6月18日のニコ-ヨ-ク條約を中心として, JCAジャーナル, 第36卷第2號.
- 中野俊一郎, “國際商事仲裁における 實效性の確保”, 神戸法學 第38卷 第2號.
- 川上太郎, “わか國における 外國仲裁判斷の 執行判決に關する 綜合研究(1)-(6)”, JCAジャーナル, 第24卷 第9號.
- Schwab/Walter, Schiedsgerichtsbarkeit, 4 Aufl. 1990.
- Rolf A. Schutze, Schiedsgericht und Schiedsverfahren, 1991.
- ICCA Year Book, Commercial Arbitration vol. XIX, Kluwer, 1994.

ABSTRACT

A Study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Korea

Yong-Kil Kim

In the approaching 21th century, the outstanding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has established arbitration as the preferred form of dispute resolution o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Because the form of commercial dispute becomes more complicated and varied with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them, the reasonable and rapid settlement of them must be the important problem simultaneously. In this article, the author discusses various issues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foreign arbitral awards under Korean Arbitration Act, which is modeled after the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f the UNCITRAL of 1985. The Dec. 31, 1999 amendment to the Korean Arbitration Act admits the basis for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rendered under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of 1958(commonly known as the New York Convention). Korea has acceded to the New York Convention since 1973. When acceding to the convention, Korea declared that it will apply the Convention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s made only in the territory of anther Contracting State on the basis of reciprocity. Also, Korea declared that it will apply the Convention only to differences arising out of legal relationships, whether contractual or not, which are considered as commercial under the national law of Korea. The provision relating to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falling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consists of Article III, IV, V. In particular, Article V of the New York Convention) enumerates the grounds for refusal of recognition foreign arbitral awards. The grounds are separated into two categories : One that abides by procedures and the others are based on national legal sovereignty. In Korea, a holder of a foreign arbitral award is obliged to request from the court a judgment ordering enforcement of awards. Because Korea requires enforcement to be based on a judgement, the result is that arbitral of award holders are forced to institute domestic litigation.

Key words :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Foreign Arbitral Awards, Commercial Dispute, New York Convention, Arbitral Clause, Ad hoc Arbitration, Competent Authority.